



: 2019-04-01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6780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A조합



피고, 항소인 B군수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182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20.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02,677,48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2 기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71,17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 C면, D면, E면 일원을 구역으로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 F 외 6필지 토지 8,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08. 9. 4. 1,713㎡ 규모의 G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2008. 9. 11. 84㎡ 규모의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08. 12.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마트, 주유소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원고는 2008. 10. 6.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취득세 17,25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5,260원 합계 18,977,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¹⁾ 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유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2. 1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중 생필품 매장(728.3㎡, 이하 '이 사건 생필품매장'이라 한다)의 조합원 사용비율이 36.5%, 이 사건 주유소의 면세유 비율이 20.8%에 불과하고, 조합원·비조합원이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마트 중 생필품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10. 11.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생필품매장, 이 사건 주유소 및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부속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 102,677,48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목록 순번 1, 2 기재 취득세 등 합계 71,175,550원은 이 사건 생필품매장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 금액이고,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취득세 등 합계 31,501,930원은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 금액이다.

라. 원고의 정관

1) 피고는 2018. 12. 17.자 준비서면에서 위 18,977,890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102,677,480원과 별개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2018. 12. 17.자 준비서면에서 별도의 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위 18,977,890원은 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용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2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생필품매장과 주유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이고, 이 사건 마트의 조합원 이용비율은 69.6%, 이 사건 주유소의 조합원 이용비율은 88.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는 비조합원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가격도 다른 일반



적인 매장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의 조합원 이용비율은 36.5%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별지2 기재와 같다.

2)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2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4 제1항은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판단기준

가) 이 사건 생필품매장, 이 사건 주유소 및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부속 토지 부분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9. 4. 이 사건 생필품매장을, 2008. 9. 11. 이 사건 주유소를, 2008. 12. 8. 각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9. 및 2010. 12.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목적은 규제하고 있고, 조합은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7조는 조합의 목적달성



을 위한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위 법은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제 58조 제1항), 어느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와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생필품매장과 주유소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 원고의 정관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으로 원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 내에 속한다.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과 앞에서 살펴본 원고의 정관 제141조 제2항, 제5조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의 비조합원 이용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²⁾

2)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2007. 11. 16. 농림부고시 제2007-74호로 개정, 시행된 것. 2009. 11. 11. 농림수산물부고시 제 2009-394호로 개정, 시행된 것도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141조 제2항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



조합원 이용비율은 원고의 고유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을 수 있다.

2)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C면은 2010. 12. 31. 기준 2,204가구, 인구 4,508명이 살고 있다. 이 사건 생필품매장, 이 사건 주유소는 C면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 소속 경제사업소는 이 사건 마트, 이 사건 주유소, 영농자재 백화점, 농산물선과장, 물치장, 사무실, 소포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사업장의 이익금은 위 경제사업소에서 통합관리되고 있다. 원고는 경제사업소, C 본점, D 지점, E 지점, H지점의 순익을 합산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데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원고의 당기 순이익과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	구분		금액(원)
2008년	당기순이익		370,752,385
	배당금	출자배당금	149,042,859
		이용고배당금	74,521,430
		합계	223,564,289
2009년	당기순이익		420,686,000
	배당금	출자배당금	170,457,000
		이용고배당금	85,229,000
		합계	255,686,000
2010년	당기순이익		508,217,000
	배당금	출자배당금	197,820,000
		이용고배당금	98,910,000
		합계	296,730,000
2011년	당기순이익		604,948,000
	배당금	출자배당금	221,855,000
		이용고배당금	122,320,000
		합계	344,175,000
2012년	당기순이익		673,070,881
	배당금	출자배당금	266,001,915
		이용고배당금	133,000,957

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농림부고시에 의하더라도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업 및 업무에 관하여는 비조합원의 이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합계	399,002,872
2013년	당기순이익		807,128,632
	배당금	출자배당금	279,002,921
		이용고배당금	181,351,898
		합계	460,354,819

(3) 이 사건 마트와 주유소를 포함하는 경제사업소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손익은 다음과 같고, 경제사업소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였다.³⁾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원)	10,031,964	0	0	0	3,523	142,823,1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6, 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생필품매장 및 부속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1, 4, 21 내지 46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공급 등을 위해 이 사건 생필품매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생필품매장과 그 부속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이 사건 생필품매장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15. 8. 19.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경제사업소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손익이 적자여서 해당기간 12. 31.을 기준으로 적자부분을 본점에서 보전(지원)하여 손익을 0원으로 만들었는데, 보전(지원)액은 2009년 3억 7,900만 원, 2010년 2억 7,800만 원, 2011년 1억 1,000만 원, 2012년 6,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는 2015. 6. 8.자 답변서에 첨부된 손익 현황표에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사건 마트, 이 사건 주유소의 손익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정하였다.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손익 (원)	마트	-83,708,031	-355,913,629	-160,170,720	-6,616,709	23,043,829	218,683,465
	주유소	-9,653,188	-64,136,535	-71,234,064	-103,363,755	-128,690,171	-29,897,957



(1) 이 사건 생필품매장의 필요성

2007년 원고의 종합 경제사업장 신축 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를 설립할 필요성으로 '농업인의 기호도에 부응한 다양한 품목 비치'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마트는 조합원에게 영농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고 조합원들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농축산물 및 공산품 등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사건 생필품매장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가 생필품 판매와 연계될 경우 농축산물 판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의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고유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 등 매출액 비율

①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 3항은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고,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 조합원으로 할 수 있고,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지고, 가입비와 경비 부담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141조 제4항은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이 사건 마트 이용자별 매출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구성하는 항목을 상이하게 파악한 결과 원고가 조합원 등 매출액 비율을 69.6%로, 피고가 36.5%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 주장,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조합원 등 매출액					비조합원 매출액 (기타) ⁴⁾
		소계	조합원	조합원간주	환원사업	학교급식	
매출액	10,401	7,228	3,798	2,004	126	1,300	3,173
비율	100%	69.6%	36.5%	19.3%	1.2%	12.6%	30.4%

<피고 주장,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조합원 매출액		비조합원 매출액				
		소계	조합원	소계	조합원간주	환원사업	학교급식	기타
매출액	10,401	3,798	3,798	2,004	2,004	126	1,300	3,173
비율	100%	36.5%	36.5%	19.3%	19.3%	1.2%	12.6%	30.4%

전라남도지사가 과세전적부심사 시 추산한 조합원 등의 사용액에 의하면 조합원 등의 전체 매출액 대비 이용량 합계는 2011년 기준 이 사건 마트의 경우 55.7%(조합원 36.5% + 준조합원 19.2%)이다.

③ ㉠ 조합원을 상대로 한 매출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사업)에 해당하고, 인근 지역 조합원 등 준조

4) 원고는 이 사건에서 기타 매출액 31억 7,300만 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억 8,000만 원을 조합원이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등 매출액으로 포함시키고, 조합원 등 매출액 비율이 84.75%라는 내용의 매출현황표(갑 제4호증의 1, 을7호증의 1)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다.



합원의 이용도 원고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점, ㉠ 환원사업은 원고가 자체 예산을 들여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조합원 운영공개 및 보답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초대한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교부하는 사업인데, 이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목(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학교급식 사업은 친환경 급식사업과 일반 급식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친환경 급식사업은 원고가 피고가 속한 B군과 체결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에 따라 B군 내 학교 및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B군으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이고, 일반 급식사업은 원고가 B군 내 학교 및 어린이집과 체결한 식재료 공급계약에 따라 학교 및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B군 산하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이며, 원고는 조합원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므로, 이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제7호(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조합원 등에 대한 매출, 환원사업, 학교급식 매출은 원고가 수행하는 고유목적에 부합하고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유업무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마트의 경우 원고의 고유업무 사업에 속하는 매출액 비율은 원고 주장과 같이 69.6%를 상회한다.

④ 비록 비조합원에 대한 생필품을 판매함에 있어 조합원과 별다른 차별이 없으나 그 비율은 약 30% 이하로 보이고(비조합원 매출 기타 30.2%가 순수하게 비조합원 매출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농축산물 판매와 연계하여 농축산물 판매를 증대시키려는 원고의 고유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매출로 볼 수 있다.

⑤ 위 2011년 이 사건 마트의 이용자별 매출액은 그 기간 전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사정

① 이 사건 마트를 포함한 경제사업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적자이거나 거의 영업수익이 없었고, 경제사업소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다른 사업부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였다. 경제사업소에는 이 사건 마트 외에도 이 사건 주유소, 영농자재 백화점 등을 통한 수익이 있는 점, 이 사건 주유소보다는 이 사건 마트를 활성화하는 데 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생필품매장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생필품매장의 수익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 수익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당기순이익을 내고 출자배당, 이용고배당을 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경제사업소, C 본점, D 지점, E 지점, H지점의 손실을 합산한 금액인 점, 경제사업소가 적자이거나 영업수익이 거의 없는 때에도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출자배당, 이용고배당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생필품매장을 통한 수익으로 이용고배당에 사용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10. 8.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10년도 재산세(9월) 부과·징수 운영요령(갑 제26호증)에 의하면 농협이 운영하는 공산품매장의 경우 조합원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목적사업(구매·공급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 적용하여 읍·면 지역은 농협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그 이유로 지역 농협은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경제적·사회적 열위 계층인 농민의 권익 보호를 취지로 설립·운영하는 점을 들고 있다.

다) 이 사건 주유소 및 부속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5, 제19, 20, 21, 28호증, 을 제5, 7, 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조합원 등을 위한 유류공급보다는 일반인에 대한 유류판매 비율이 높고 일반주유소의 판매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다른 원고의 고유업무 사업과의 연계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할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와 부속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이 사건 주유소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주유소 현황과 유류판매의 특성

원고의 사업구역 내 주유소 현황을 보면 C면은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하여 4개, E면 5개, D면 5개가 있고, 이 사건 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설치위치, 판매가격, 판매방식 등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며, 유류판매에 있어 조합원 등과 비조합원을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유소는 C면 시내에 위치하여 있다. 이 사건 주유소와 일반주유소를 구분할 뚜렷한 표지가 없고, 다른 원고의 고유사업과 연계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할 사정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2) 조합원 등의 매출액 비율

① 2016. 1. 1. 기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서 면세유 배정등록 농가(농업인이면 반드시 조합원일 필요가 없다)가 1,559가구이고, 2016. 6. 8. 기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서



동력예취기, 농산물 건조기 등 유류를 소비하는 농업기계가 총 474대이며, 2016. 5. 13. 기준 C면, D면, E면에 일반 화물차, 승용차, 기타 차량 4,246대가 등록되어 있다.

② 원고는 조합원의 연간 추정 소비량 전부를 이 사건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이 사건 주유소의 면세유 매출액 5억 2,400만 원 (20.8%)과 과세유 매출액 중 E면, C면, D면 조합원 사용액 일괄 추계액 17억 1,600만 원(68.1%) 합계 22억 4,000만 원(88.9%)이 조합원 이용비율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사업구역인 C면, E면, D면의 주유소 개수 현황을 고려하여 과세유 매출액 중 E면, D면 조합원의 추정 이용률을 약 20%, C면 조합원의 추정 이용률을 약 25%로 보아 8억 9,800만 원(35.6%)가 조합원 이용비율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백만 원)

구분	종매출액 (A+B)	조합원등 사용액 (A+C)	면세유류 (A)	과세유류						
				계 (B)	조합원 사용액(C)				비조합원	
					소계	C	E면	D면		
원고 주장	사용액	2,521	2,240	524	1,997	1,716	611	724	381	281
	비율	100%	88.9%	20.8%	79.2%	68.1%	24.3%	28.7%	15.1%	11.1%
피고 주장	사용액	2,521	898	524	1,997	374	153	145	76	1,623
	비율	100%	35.6%	20.8%	79.2%	14.8%	6.0%	5.8%	3.0%	64.4%

도지사가 과세전적부심사 시 추산한 원고 조합원 등의 사용액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원고 조합원 등의 전체 매출액 대비 이용량 합계는 2011년 기준 35.6%(면세유 20.8% + 과세유 14.8%)이다.

③ 조합원은 매달 면세유로 가구당 31리터가 할당받아 구입할 수 있고 농업용 기계, 난방시설, 일반 차량 운영을 위해 면세유 부족분을 과세유로 충당하여야 하는 점, 과세유류 중 조합원 사용액의 경우 C면, E면, D면 조합원의 실제 이용금액을 확인하기 어



려우므로, 이 사건 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과 판매방식이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그 이용비율도 비슷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구역 내 주유소 현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조합원 등 매출액 비율은 피고 주장과 같이 35.6% 수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④ 위 2011년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조합원 등 매출액 비율은 그 기간 전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면세유 비율

과세유류의 매출액 비율이 면세유류의 매출액 비율보다 훨씬 높다. 과세유류는 유류 구입 목적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유류구입과 실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연도	과세		면세	
	주유량 비율	매출액 비율	주유량 비율	매출액 비율
2008	68%	75.9%	32%	24.1%
2009	75.2%	82.8%	24.8%	17.2%
2010	74%	81.1%	26%	18.9%
2011	68.4%	79.2%	31.6%	20.8%
평균	71.4%	79.75%	28.6%	20.25%

(4) 기타 사정

① 2007년 원고의 종합 경제사업장 신축 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를 설립할 필요성으로 '유류취급소의 저장시설 한계로 농업용 면세유 확보량이 적어 잦은 결품이 발생'하는 사정과 함께 '계속 증가되는 자가용 차량의 주유' 필요성이라는 사정을 들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확보는 유류취급소의 증설로 대응이 가능하고, 자가용 차량의 주



유는 일반주유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②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경제사업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적자이거나 거의 영업수익이 없었고, 경제사업소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의 수익을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주유소는 일반주유소와 판매가격 등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도로 바로 옆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이 사건 마트보다는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보이며, 비조합원의 이용률이 높고 다른 원고의 고유사업과도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원고는 수익 창출에 주안을 두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이 사건 생필품매장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이 사건 주유소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같은 목록 순번 1, 2 기재 이 사건 생필품매장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
.
: 2019-04-01

판사 김성주

판사 홍기만



별지1

목록

순번	과세물건	세목		금액(원)
1	F 건물(매장)	취득세	본세 9,527,660	13,539,750
			신고불성실가산세 1,905,530	
			납부불성실가산세 210,656	
		등록세	본세 10,712,120	17,327,920
			신고불성실가산세 2,142,420	
			납부불성실가산세 4,473,380	
		지방교육세	본세 2,142,420	3,251,330
			신고불성실가산세 214,240	
			납부불성실가산세 894,670	
		농어촌특별세	본세 952,760	1,353,960
			신고불성실가산세 190,550	
			납부불성실가산세 210,650	
		소계		35,472,960
		2	F 토지(매장)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49,320				
납부불성실가산세 2,265,520				
등록세	본세 10,246,630			16,574,940
	신고불성실가산세 2,049,320			
	납부불성실가산세 4,278,990			
지방교육세	본세 2,049,320			3,110,040
	신고불성실가산세 204,930			
	납부불성실사간세 855,790			
농어촌특별세	본세 1,024,660			1,456,140
	신고불성실가산세 204,930			
	납부불성실가산세 226,550			
소계				35,702,590
3	I 건물(주유소)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239,700		
		납부불성실가산세 2,452,480		
		등록세	본세 4,479,410	7,245,890
			신고불성실가산세 895,880	
			납부불성실가산세 1,870,600	
		지방교육세	본세 895,880	1,359,570
			신고불성실가산세 89,580	
			납부불성실가산세 374,110	
		농어촌특별세	본세 1,119,850	1,589,060
			신고불성실가산세 223,970	
			납부불성실가산세 245,240	
		소계		26,085,240



: 2019-04-01

4	I 토지(주유소)	취득세	본세 1,555,630	2,207,430
			신고불성실가산세 311,120	
			납부불성실가산세 340,680	
		등록세	본세 1,555,630	2,516,380
			신고불성실가산세 311,120	
			납부불성실가산세 649,630	
		지방교육세	본세 311,120	472,150
			신고불성실가산세 31,110	
			납부불성실가산세 129,920	
		농어촌특별세	본세 155,560	220,730
			신고불성실가산세 31,110	
			납부불성실가산세 34,060	
		소계		5,416,690
		합계		102,677,480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었다가,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



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 가.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다. 내지 카. 생략

3. 신용사업(각 목 생략)

4. 내지 6호 생략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019-04-01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끝>